

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조 례 안

(1 건)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안번호	조 례 명	쪽수
2024-8	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· 공유재산 관련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(기획예산담당관)	1

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·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24-8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다자녀 기준완화,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 등을
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해소하고
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(안 제1조~제9조)

- 1) 세 자녀 이상 다자녀 ⇒ 두 자녀 이상 다자녀
- 2) 18세, 19세, 24세, 25세 자녀 기준 ⇒ 24세 자녀로 통일
(가) 24세 근거: 「청소년기본법」 상 청소년
(나) 의미: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

나. 만 나이 표현 정비(안 제9조~제12조)

- 1) 나이 표현에서 “만” 삭제
- 2) 근거: 만 나이 통일법(「행정기본법」, 「민법」) 개정

다. 행정안전부 권고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(안 제13조)

- 1)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: 기부채납일 ⇒ 사용허
가를 받은 날
- 2) 근거: 「공유재산법」 제21조제1항

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경쟁제한 규정 정비(안 제14조)

- 1) 지역건설 자재·기계·근로자의 “우선” 사용·고용 규정에서
“우선” 삭제
- 2) “관급자재로 공급”과 유사한 의미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, 「민법」 제158조, 「공유재산법」 제21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12. 12.~2024. 1. 2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·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「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”를 “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”로 한다.

제2조(「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

제3조(「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수송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

제4조(「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

제5조(「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“세 자녀”를 “둘”로 한다.

제6조(「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감경률 100분의 50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3.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24세 이하 자녀

제7조(「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

제8조(「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

제9조(「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감면율 100분의 100 감면대상 중 “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(1명/1과목)”를 “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(1명/1과목)”로 한다.

제10조(「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1조(「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12조(「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호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“만 7세 이하”를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제13조(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」의 개정)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(이하 “지역건설근로자”라 한다)의 고용,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(이하 “지역건설기계”라 한다)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(이하 “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”라 한다)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,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,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